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57 발의연월일: 2025. 3. 5.

발 의 자:서삼석·강득구·신영대

이병진 • 채현일 • 이원택

김동아 • 박수현 • 신정훈

문금주 • 박용갑 • 김원이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 체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마리나 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 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3년 12월 기준 전국 239개사에 320여 척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등록사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하여 해양사고 발생의 위험성 상존 및 이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이용자 등의 안전운항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 및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등록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리나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 중 일부를 벌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마리나업 관련 제도를 정비·개선하 여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활성화하여 마리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 변경(안 제24조)

자치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성장을 목적으로 마리나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이 정하는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함.

나. 안전운항을 위한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등 의무 신설(안 제28조의 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종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승객 전원에 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 하고,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선내에 게시하도록 함.

다.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 추가(안 제28조 의7)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운항하거나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항을 한 경우 등을 마리나업 등 록사업자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함.

라.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의무보험 제도 개선(안 제28조의8)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보험가입 의무를 제외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 등록사업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로 하여금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

마.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항구역 등 제한 근거 마련(안 제28조의13)

운항해역 인근의 기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에는 마리나선박의 안 전운항을 위한 조치로서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28조의14)

마리나선박 이용자로 하여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등의 구명조끼착용 지시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마리나선박 이용자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여 스스로 운항하려는 경우 긴급구조기관 등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사. 마리나항만 준공전 사용 미신고 위반 규제완화 및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위반 규정 정비(안 제38조).

마리나항만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마리나항만 시설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제재(과태료)로 규제를 완화하고,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에 종사한 자 중에서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어선법」 제25조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및「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수리업 등록을 한 자는 벌칙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8조의5의 제목 중 "등록사업자"를 "등록사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승객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선내에 게시하고, 출항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1. 기상상태
- 2. 출항 전 안전점검 결과
- 3.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설비의 위치 및 사용법
- 4. 유사시 대처요령

5. 그 밖에 안전 및 선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률 제19891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28조의7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경우
- 11.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 운항을 한 경우
- 12.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 명령이 나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28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리나선박 정비업은 제외한다.

- ② 보험회사는 등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4장의2에 제28조의13 및 제28조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13(운항구역의 제한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해역 인근의 기상·해수면·내수면의 상태 가 악화된 경우
 - 2. 운항해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운항해역 인근에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 많은 경우
 - 4. 그 밖에 마리나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 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28조의14(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의무) ①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나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의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 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선박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종사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 ② 마리나선박 이용자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여 스스로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리나선박에 승선한 승객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할 것
- 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종사자 또는 긴급구조기관과 연락이 가능 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

제38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선박 지정 정비사업장, 「어선법」 제25조에 따른 어선 지정 정비사업장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선박수리업으로 지정·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벌칙)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 명령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본문 중 "제39조까지"를 "제39조까지 및 제39조의2"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 3. 제28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선박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 4. 제2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선내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승객에게 안내하지 아니한 자
- 6. 제28조의14를 위반하여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4조(관리규정) ① (생 략) | 제24조(관리규정) ① (현행과 같 |
| | 승) |
| ② 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 ② |
|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 |
| 없이 그 내용을 <u>해양수산부장</u> | 시·도지사 |
| <u>관</u>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규정 | ③ <u>시·도지사는</u> |
| 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 | |
| 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 |
| 는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 | |
| 할 수 있다. | |
|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 제28조의5(<u>등록사업자 등의</u> 의무) |
| ~ ③ (생 략) | ① ~ ③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④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그 |
| | 종사자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
| |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 |
| | 로 정하는 마리나선박의 경우 |
| | 에는 승객 전원에게 구명조끼 |
| | 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
| |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 |
| | 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
| | <u>수 있다.</u> |
| <u><신 설></u> | 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그 |
| | |

법률 제19891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시· 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 종사? | 자는 | 안전 | 운항이 | 레 된 | 반한 | 사 |
|--------|-----|----|-----|------------|----|---------|
| 항을 | 작성 | 하여 | 선내 | 레 | 게스 |]하 |
| 고, 출 | · 항 | 전에 | 승객이 | 에게 | 안전 |] 에 |
| | | | 호의 | | | |
| 내하 | | | | <u>'</u> | | |
| 1 -1 | | | • | | | |

- 1. 기상상태
- 2. 출항 전 안전점검 결과
- 3.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설 비의 위치 및 사용법
- 4. 유사시 대처요령
- 5. 그 밖에 안전 및 선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법률 제19891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 |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략)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등록사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① ---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 다.

<신 설>

- 10.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운항 한 경우
- 11.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 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환각 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 적으로 운항을 하지 못할 우 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항을 한 경우
- 12.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운 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 명령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명 령을 위반한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 --. 다만, 마리나선박 정비업은 제외한다.
- ② 보험회사는 등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 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신 설>

<신 설>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28조의13(운항구역의 제한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
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
할 수 있다.

- 1.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해역인근의 기상·해수면·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 2. 운항해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운항해역 인근에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 많은 경우
- 4. 그 밖에 마리나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항 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 설>

- 제28조의14(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마리나선박을 이 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나 종사 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의 안전운항 및 위해방 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 시를 위반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선 박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 작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 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종사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 ② 마리나선박 이용자가 마리 나선박을 대여하여 스스로 운 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마리나선박에 승 선한 승객 전원에게 구명조끼 를 착용하도록 할 것
 - 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종사 자 또는 긴급구조기관과 연락 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 3.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u>자</u> <<u>단서 신</u>

4. (생 략)<신 설>

|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 |
|-------------------------|
| 제38조(벌칙)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 2. < 삭 제 > |
| |
| |
| 0 |
| 3 |
| |
| |
| |
| <u>자.</u> <u>다만, 제2</u> |
| 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마 |
| 리나선박 정비업에 종사하는 |
| 자로서 「선박안전법」 제20 |
| 조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
| 「어선법」 제25조에 따른 지 |
| 정 정비사업장 또는 「항만운 |
| 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
| 선박수리업 등록을 한 자는 |
| 제외한다. |
| 4. (현행과 같음) |
| 제39조의2(벌칙) 제28조의13제1항 |
| 에 따른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 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u><신</u>설>

| 시 | 정지 | 명령을 | 위빈 | ·한 | 자는 | 6 |
|----------|-----|---------------|-----|------|-----------|----------|
| 개 | 월 ㅇ |]하의 건 | 성역 | 또는 | 500 | <u>만</u> |
| <u>원</u> | 이하 | ·의 벌금 | 에 초 |] 한디 | <u>ŀ.</u> | |
| 제40 | 조(양 | 벌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9 | 조까 | 지 |
| <u>및</u> | 제3 | <u>9조의2</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1 | 조(과 | 태료) (| 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같음 | -) | | | |
| 2. | 제18 | 조제4항 | 단서 | 에띠 | 다른 | <u>준</u> |
| | 공 전 | 사용의 | 신고 | 를 さ | 하지 | 아 |

간의 제한 명령이나 영업의 일

| | <u>니하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u> |
|--------------------|------------------------|
| | <u> </u> |
| <u><신 설></u> | 3. 제28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
| | 마리나선박 승객에게 구명조 |
| | 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
| | <u>자</u> |
| <u><신 설></u> | 4. 제2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
| |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선내 |
| | 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승객 |
| | 에게 안내하지 아니한 자 |
| <u>2.</u> (생 략) | <u>5.</u> (현행 제2호와 같음) |
| <u><신 설></u> | 6. 제28조의14를 위반하여 마리 |
| | 나선박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
| | <u>지키지 아니한 자</u>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